

시 흥 하 중 공 공 주 택 지 구
전 략 환 경 영 향 평 가 서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2019. 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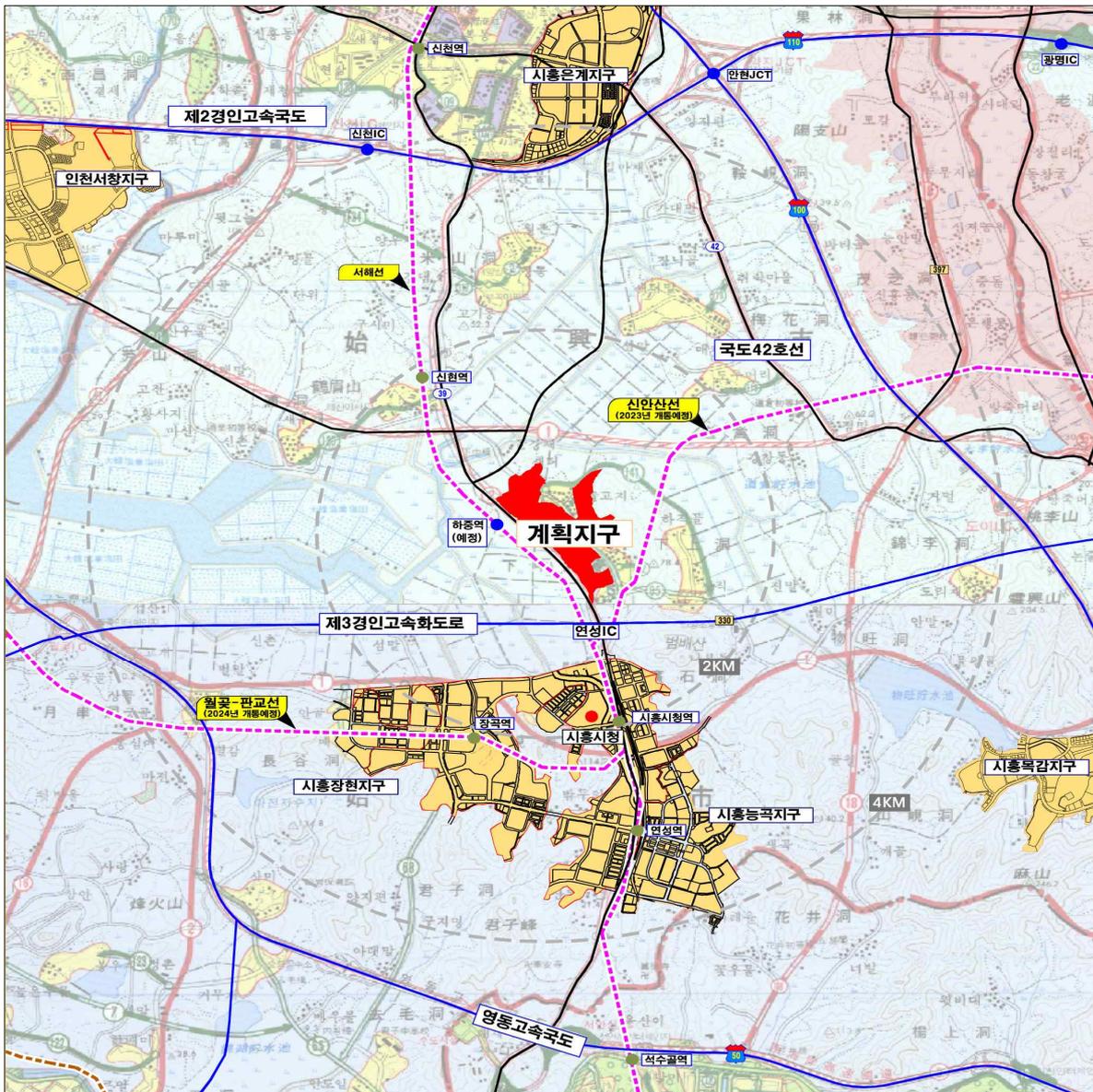


국토교통부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1. 계획의 개요

- 가. 계획명 : 시흥하중 공공주택지구
- 나. 계획위치 : 경기도 시흥시 하중동 일원
- 다. 계획면적 : 461,653.6㎡(GB 해제면적 459,611.6㎡)
- 라. 사업기간 : 2019년 ~ 2023년
- 마. 계획수립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
- 바. 승인기관 : 국토교통부



(그림 1) 계획지구 위치도

2. 주민 등 의견수렴

- 시흥하중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주민 등의 의견수렴)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고·공람 등), 제14조(주민 등의 의견제출 방법 등), 제15조(설명회의 개최), 제16조(공청회의 개최 등)의 규정에 따라 평가서(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의견수렴을 실시함

2.1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가. 공고일자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1746호(2018년 12월 27일)
- 중앙일간지 : 서울신문(2018년 12월 27일)
- 지방일간지 : 인천일보(2018년 12월 27일)

나.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 2018년 12월 27일 ~ 2019년 1월 25일(토요일, 공휴일 제외)
- 공람장소

구 분	공 랑 장 소
경기도 시흥시	시흥시청 도시정책과
	연성동 행정복지센터
	신현동 주민센터
	매화동 주민센터
	장곡동 주민센터

다. 주민의견 제출

- 제출기한 : 공람기간 완료 후 7일 이내(2019년 2월 1일까지)
- 제출방법 : 공람장소에 비치된 주민의견서 양식에 의거 서면 제출

라. 공개방법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www.eiass.go.kr)

라. 공람 결과

- 제출된 주민의견 제출서 : 총 32건(총 32명)
(2.3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내용 참조)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1746호

**시흥하중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5조 규정에 따라 「시흥하중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1. 계획의 개요

- 가. 계 획 명 : 시흥하중 공공주택지구
- 나. 위 치 : 경기도 시흥시 하중동 일원
- 다. 계획규모 : 461,653.6㎡
- 라. 시 행 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2. 공람기간 및 장소

- 가. 공람기간 : 2018년 12월 27일~2019년 1월 25일(21일간, 공휴일·토요일 제외)
- 나. 공람장소 : 시흥시청 도시정책과, 연성동 행정복지센터, 신현동 주민센터, 매화동 주민센터, 장곡동 주민센터
- 다. 공람내용 및 관계도서 : 전략환경영향평가서(공람장소 비치)

3. 주민설명회 개최

- 가. 일 시 : 2019년 1월 18일(금) 오후 2시
- 나. 장 소 : 연성동 행정복지센터 2층 대회의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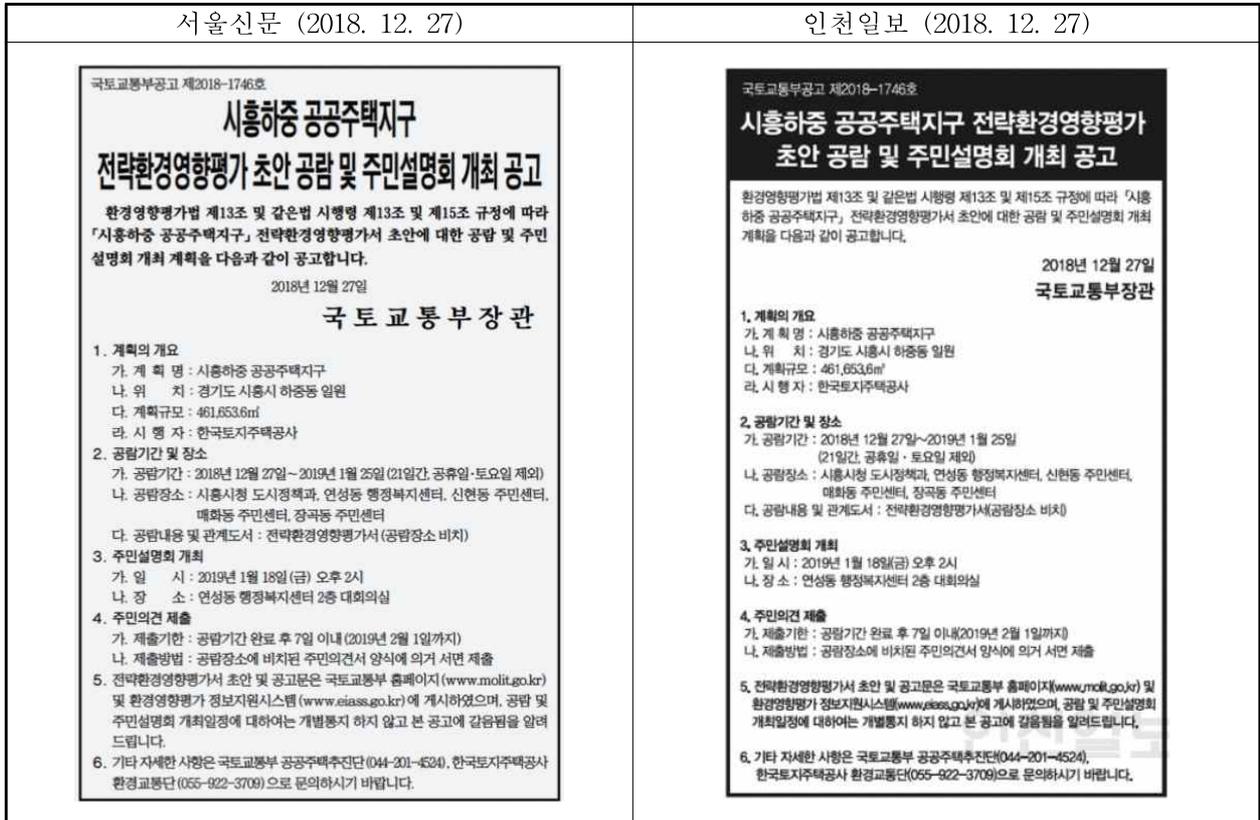
4. 주민의견 제출

- 가. 제출기한 : 공람기간 완료 후 7일 이내(2019년 2월 1일까지)
- 나. 제출방법 : 공람장소에 비치된 주민의견서 양식에 의거 서면 제출

5.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및 공고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www.eiass.go.kr)에 게시하였으며,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일정에 대하여는 개별통지 하지 않고 본 공고에 같음됨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044-201-4524), 한국토지주택공사 환경교통단(055-922-370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림 2) 공고문



(그림 3) 신문광고



(그림 4)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게재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로그인](#) · [사이트맵](#) · [도움말](#)

환경영향평가소개 사업조회 협의통계 국민참여 건강영향평가

국민참여

National participation

- 협의진행현황 +
- 평가항목 결정내용 공람 +
- 평가서 초안 공람 -
- 사용자지원 +
- . Q&A
- . FAQ
- . 공지사항

평가서 초안 공람

사업명	시흥하중 공공주택지구	
사업위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적 	
	소재지	면적
	경기도 시흥시 하중동 (하중로 98) 일원	
협의대상 (협의관련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계획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6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사업구분	도시개발 /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사업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 승인기관 : 국토교통부 • 사업규모 : 461653.6㎡ • 사업비 : 00 백만원 	

(그림 5)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www.eiass.go.kr) 게재

2.2 주민설명회

가. 주민설명회 개최공고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공고에 포함하여 공고

나. 주민설명회 개최장소 및 일시

구 분	장 소	일 시	비 고
주민설명회	경기도시흥시 연성동 행정복지센터(2층 대회의실)	2019년 1월 18일(금) 14:00	-

다. 주민설명회 개최 결과

- 주민들의 설명청취 거부로 주민설명회 무산

The screenshot shows the website of the Korea Ministry of Land, Urban Planning and Construction (www.molit.go.kr). The main content is a public notice titled "시흥하중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설명회 생략 공고" (Notice of Omission of Resident Explanation Meeting for the Siheung-hajung Public Housing Project Strategic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Draft). The notice states that the meeting was originally planned but cancelled because it could not be held normally. It is dated January 23, 2019, and signed by the Minister of Land, Urban Planning and Construction.

(그림 6)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게재

<p>■ 주민의견 수렴 결과</p>	
게시기간	2019.01.23~2019.02.01
내용	<p>「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1746호(2018.12.27)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하였으나, 주민설명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따라 주민설명회를 생략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계획의 개요 ○ 계획 명 : 시흥하중 공공주택지구 ○ 위 치 : 경기도 시흥시 하중동 일원 ○ 계획규모 : 461,653.6㎡ ○ 시 행 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2. 무산된 주민설명회 개최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19년 1월 18일(금) 오후 2시 ○ 장 소 : 연성동 행정복지센터 2층 대회의실 3. 주민설명회 생략 사유 ○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하였으나 주민들의 설명청취 거부로 주민설명회가 무산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설명회를 생략함. 4. 설명자료 열람방법 및 기타사항 ○ 시흥하중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설명회 자료를 시흥시청 도시정책과, 연성동 행정복지센터, 신현동 주민센터, 매화동 주민센터, 장곡동 주민센터에 비치하였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와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www.eiass.go.kr)에 게재하였으나 주민들께서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044-201-4524), 한국토지주택공사 환경교통단(055-922-370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p>
자료	<p>01 시흥하중_공공주택지구_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_주민설명회_생략_공고.pdf 02 시흥하중_공공주택지구_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_주민설명회_자료.pdf</p>

(그림 7)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www.eiass.go.kr) 게재

경향신문 (2019. 1. 23)	인천일보 (2019. 1. 23)
<p>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80호</p> <p>시흥하중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설명회 생략 공고</p> <p>「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1746호(2018.12.27)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하였으나, 주민설명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따라 주민설명회를 생략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19년 1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p> <p>1. 계획의 개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 명 : 시흥하중 공공주택지구 ○ 위 치 : 경기도 시흥시 하중동 일원 ○ 계획규모 : 461,653.6㎡ ○ 시 행 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p>2. 무산된 주민설명회 개최 일시 및 장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 시 : 2019년 1월 18일(금) 오후 2시 ○ 장 소 : 연성동 행정복지센터 2층 대회의실 <p>3. 주민설명회 생략 사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하였으나 주민들의 설명청취 거부로 주민 설명회가 무산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설명회를 생략함. <p>4. 설명자료 열람방법 및 기타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흥하중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설명회 자료를 시흥시청 도시정책과, 연성동 행정복지센터, 신현동 주민센터, 매화동 주민센터, 장곡동 주민센터에 비치하였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와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www.eiass.go.kr)에 게재하였으나 주민들께서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 044-201-4524), 한국토지주택공사 환경교통단(☎ 055-922-370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p>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80호</p> <p>시흥하중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설명회 생략 공고</p> <p>「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1746호(2018.12.27)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하였으나, 주민설명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따라 주민설명회를 생략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19년 1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p> <p>1. 계획의 개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 명 : 시흥하중 공공주택지구 ■ 위 치 : 경기도 시흥시 하중동 일원 ■ 계획규모 : 461,653.6㎡ ■ 시 행 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p>2. 무산된 주민설명회 개최 일시 및 장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 시 : 2019년 1월 18일(금) 오후 2시 ■ 장 소 : 연성동 행정복지센터 2층 대회의실 <p>3. 주민설명회 생략 사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하였으나 주민들의 설명청취 거부로 주민설명회가 무산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설명회를 생략함. <p>4. 설명자료 열람방법 및 기타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흥하중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설명회 자료를 시흥시청 도시정책과, 연성동 행정복지센터, 신현동 주민센터, 매화동 주민센터, 장곡동 주민센터에 비치하였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와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www.eiass.go.kr)에 게재하였으나 주민들께서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044-201-4524), 한국토지주택공사 환경교통단(055-922-370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림 8) 신문공고

2.3 공청회

가. 공고일자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193호(2019년 2월 21일)
- 중앙일간지 : 한겨레신문(2019년 2월 21일)
- 지방일간지 : 경인일보(2019년 2월 21일)

나. 공청회 개최장소 및 일시

구 분	장 소	일 시	비 고
공청회	시흥생명농업기술센터 회의실 3층	2019년 3월 8일(금) 14:00	-

다. 개최결과

- 정상진행(2.3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내용 참조)

The screenshot shows the official website of the Ministry of Land, Urban Planning and Construction (www.molit.go.kr). The main content area displays a public hearing announcement. The title is '시흥하중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청회 개최 공고' (Siheung-hyeon Public Housing Area Strategic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Draft) Public Hearing Announcement). The announcement text states that according to Article 13 of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ct' and Article 16 of the 'Public Housing Act', the public hearing for the draft assessment is being held on February 21, 2019. The announcement is signed by the Minister of Land, Urban Planning and Construction.

(그림 9)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게재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193호

시흥하중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청회 개최 공고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시흥하중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21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계획의 개요

- 계 획 명 : 시흥하중 공공주택지구
- 위 치 : 경기도 시흥시 하중동 일원
- 계획규모 : 461,653.6㎡
- 시 행 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2. 공청회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19년 3월 8일(금), 오후 2시
- 장 소 : 시흥생명농업기술센터 회의실(3층)

3. 기타사항

- 공청회 개최와 관련하여 시흥하중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주민은 의견진술자를 추천하려는 경우 2019년 3월 1일까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 서식에 따라 의견진술자 추천서를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fax 044-201-5659)로 제출하여 공청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044-201-4524),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영향평가단(055-922-371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림 10) 공고문

한겨레신문(2019년 2월 21일)	경인일보(2019년 2월 21일)
<p>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193호</p> <p>시흥하중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청회 개최 공고</p> <p>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시흥하중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p> <p>2019년 2월 21일</p> <p>국토교통부장관</p> <p>1. 계획의 개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명 : 시흥하중 공공주택지구 ○ 위치 : 경기도 시흥시 하중동 일원 ○ 계획규모 : 461,653.6㎡ ○ 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p>2. 공청회 일시 및 장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 2019년 3월 8일(금), 오후 2시 ○ 장소 : 시흥생명농업기술센터 회의실(3층) <p>3. 기타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청회 개최와 관련하여 시흥하중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주민은 의견진술자를 추천하려는 경우 2019년 3월 1일 까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 서식에 따라 의견진술자 추천서를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fax 044-201-5659)로 제출하여 공청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044-201-4524),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영향평가단(055-922-371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p>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193호</p> <p>시흥하중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청회 개최 공고</p> <p>「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시흥하중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p> <p>2019년 2월 21일</p> <p>국토교통부장관</p> <p>1. 계획의 개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명 : 시흥하중 공공주택지구 ○ 위치 : 경기도 시흥시 하중동 일원 ○ 계획규모 : 461,653.6㎡ ○ 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p>2. 공청회 일시 및 장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 2019년 3월 8일(금), 오후 2시 ○ 장소 : 시흥생명농업기술센터 회의실(3층) <p>3. 기타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청회 개최와 관련하여 시흥하중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주민은 의견진술자를 추천하려는 경우 2019년 3월 1일까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 서식에 따라 의견진술자 추천서를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fax 044-201-5659)로 제출하여 공청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044-201-4524),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영향평가단(055-922-371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림 11) 신문공고



(그림 11) 공청회 전경

2.3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내용

가. 주민공람

의견 제출자	의견요지	반영여부(미반영 사유)	비고
주민 의견 (권득* 외 31인)	○ 환경은 중요하고 사람은(원주민) 어떻게 되도록 상관없단 말인가요	○ 계획수립에 따른 자연 및 생활환경에 대한 영향예측 및 저감대책을 수립·제시하였음	-
	○ 형식적이고 무성의한 자료임을 알 수 있고 평가의 의의를 부여할수 없다	○ 「환경영향평가법」 및 관련 작성 규정을 준수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였음	-
	○ 일방적인 설명회보다는 문제점에 대한 상호간의 의견제시가 필요하다고 여겨짐	○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공청회를 진행하여 추가의견을 수렴하였음	-
	○ 평가서 자체가 요식적이고 형식적으로 작성되었고, 환경보존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가 없음	○ 본 보고서는 지구지정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로 「환경영향평가법」 및 관련 작성 규정을 준수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향후 지구계획 수립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시 세부적인 계획에 대하여 영향예측 및 저감대책을 수립 할 계획임	-
	○ 오랜기간동안 실질적으로 거주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사업진행을 하여야 함	○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공청회를 진행하여 추가의견을 수렴하였음	-
	○ 과거 조사내역 및 문헌조사에만 의존한 내용 부실	○ 「환경영향평가법」 및 관련 작성 규정을 준수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였음	-
	○ 환경영향평가 재실시 및 공공주택사업 전면 재검토 의견 논의가 필요함	○ 본 보고서는 지구지정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로 「환경영향평가법」 및 관련 작성 규정을 준수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향후 지구계획 수립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시 세부적인 계획에 대하여 영향예측 및 저감대책을 수립 할 계획임	-

나. 주민공청회

의견 제출자	의견요지	반영여부(미반영 사유)	비고
박성*	○비대위에서는 국토교통부 명의로 공문을 수령 하였으며, 중앙토지위원회 및 중도위(중앙도시계획 위원회)에서 지구지정에 대해 승인이 난 것이 아무것도 없음, 그러므로 LH공사는 유일 제안 자일 뿐이지 사업자대표 자리에 앉을 자격이 없음	○본 계획은 국가에서 청년, 신혼부부, 서민 등을 위해 주거공간을 공급하기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녹지지역에 공공개발을 해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이며, LH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에 해당함	-
	○토지수용을 통한 주택공급 방식은 또다른 빈곤층을 양산할 뿐임	○본 계획은 국가에서 청년, 신혼부부, 서민 등을 위해 주거공간을 공급하기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녹지지역에 공공개발을 해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임	-
	○본 사업은 신혼부부를 위한 행복주택, 청년들을 위한 공익성 사업이라고 발표하였으나, 신혼부부 필수조건인 국공립유치원이 시흥시 교육지원청 문의결과 장현동에 1개 개설되어 있고 추가 개설 계획도 없어 현재 기준으로 2022년까지 가야하며, 청년주거단지도 인근에 대학교가 없고 입주조건이 평균소득대비 80%이하인데 여기서 강남 순환로를 이용해 양재로 갈 경우 통행료가 4,600원이면 한 달 20만원인데 청년이 월 20 만원을 내고 출퇴근이 불가능하며, 주변지역의 원룸 공실률이 55%가 넘어가는 등 사업타당성 조사가 부족함	○본 계획은 국가에서 청년, 신혼부부, 서민 등을 위해 주거공간을 공급하기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녹지지역에 공공개발을 해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이며, 교육시설 등은 향후 관련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적정한 계획을 수립하겠음	-
	○원주민과 농민을 쫓아내고 신혼부부, 청년을 위한 주거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무슨 공익사업인지?	○본 사업은 국가에서 청년, 신혼부부, 서민 등을 위해 주거공간을 공급하기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녹지지역에 공공개발을 해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임	-
	○현재 하중동에 거주하는 원주민의 경우 평균 적으로 두 세대가 같이 거주하고 있으며, 현재 방식으로 최대 2배까지 보상을 받아도 지금 수준의 삶을 영위하지 못함	○토지 및 지장물은 향후 지구계획 승인 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보상할 계획임	-
	○서해선, 신안산선 발표 후 하중동의 땅값이 많이 올랐으나, 표준지 공시지가는 현실과 동떨어지는 수준임	○토지 및 지장물은 향후 지구계획 승인 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보상할 계획임	-
	○주민들은 토지수용 절대 반대하며, 폭력적인 사업진행을 즉각 중단바람	○본 계획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적법 하게 진행중이며, 국가에서 청년, 신혼부부, 서민 등을 위해 주거공간을 공급하기 위한 공공개발이 불가피한 상황임	-

의견 제출자	의견요지	반영여부(미반영 사유)	비고
권득*	○공익사업이라 하여도 국토개발이라는 명목으로 개인을 희생시키는 것은 용납할 수 없음	○본 계획은 국가에서 청년, 신혼부부, 서민 등을 위해 공공개발을 해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임	-
	○행복주택이든 청년주택이든 개인의 사유재산울 건드릴 권리는 없음	○본 계획은 국가에서 청년, 신혼부부, 서민 등을 위해 공공개발을 해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임	-
	○기존 원주민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사유재산에 대한 보장없이는 개발 절대 반대	○토지 및 지장물은 향후지구계획 승인 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보상할 계획임	-
이형*	○주민들의 의견수렴 없는 일방적인 정책에 절대 반대함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공청회를 진행하여 추가의견을 수렴하였음	-
	○국토교통부에서 지구지정을 하는데 왜 LH가 사업자 대표로 나와 있는지?	○LH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에 해당함	-
신영*	○지구지정에 대해 결정된 것이 없는데 이미 사업 계획이 결정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임	○본 계획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지구지정을 하는 단계로 관련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중에 있음	-
권영*	○원주민의 입장이 되면 어떨지 한분만 대답바람	○본 계획은 국가에서 청년, 신혼부부, 서민 등을 위해 주거공간을 공급하기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녹지지역에 공공개발을 해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임	-
	○공공주택지구 개발을 목적으로 하중역을 지정한 것으로 판단됨	○본 계획은 국가에서 청년, 신혼부부, 서민 등을 위해 주거공간을 공급하기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녹지지역에 공공개발을 해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임	-
	○개발하면 수혜는 하중동 원주민이 아닌 타 지역 사람들이 누리게 됨	○본 계획은 국가에서 청년, 신혼부부, 서민 등을 위해 공공개발을 해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임	-
김학*	○서민의 농토를 가지고 행복주택을 계획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국민에게 지탄받을 일임	○본 계획은 국가에서 청년, 신혼부부, 서민 등을 위해 주거공간을 공급하기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녹지지역에 공공개발을 해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임	-
	○하중동은 오래전부터 그린벨트로 묶여있던 지역으로, 농민의 농토가 아닌 하중역(예정) 맞은편 염전부지(국유지)를 개발하기 바람	○본 계획은 국가에서 청년, 신혼부부, 서민 등을 위해 주거공간을 공급하기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녹지지역에 공공개발을 해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임	-
이경*	○농민이 억울하지 않도록 충분한 보상이 된다면 찬성함	○주민분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보상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음	-